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4. 3. 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우승기 내무위원장외 11인

나. 제출일자 : 93. 12. 7

다. 회부일자 : 93. 12. 23

라. 상정일자 : 94. 3. 18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장학금 수혜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년도에는 1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자녀수를 제안하고 타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 지방화시대 맞지 않는 조항인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참작 규정을 삭제

나. 주요골자

○ 단서조항신설 당해년도 1자녀에 한하며 타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제3조)

○ 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의견을 참작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단서조항에 장학생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신설(제4조제1항)

3. 전문위원 설명요지

장학금 수혜의 기획균등과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 통장 자녀에 대한 지급을 제외시킴으로서 수혜의 폭을 넓히고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시교육 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참작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임

4. 토론요지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청하는 모든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안)을 향후 다시 발의토록 하자.

5. 수정안요지

없슴.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 : 없슴.

7. 첨부 :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1부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장학금지급년도별로 통장1인에 대하여 1자녀에 한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 제1항중 "시교육 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조문을 삭제하고 말미에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3 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신설)	제 3 조(추천) …… …… …… ……다만 장학금 지급 년도별로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에 한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 4 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때에는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② (생략)	제 4 조(선발) ① …… ……(삭제) …… …… ……이 경우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